



주목할 만한 내용

Covid-19 관련 내용

1. 2020년 05월 29일 제 84/NQ-CP 호 결의: 공공 투자 지출 촉진 및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해결책
2. 피고용인의 Covid-19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CIT상 손금으로 공제 가능
3. Covid-19 기간동안 수입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과 제출기한
4. Covid-19 의 영향으로 발생한 관세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면제

기타 규정

5. 조세 행정법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
6. 글로벌 소득에 대해 외국인 개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개인소득세
7. 법인소득세법상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에 대한 제 20/2017/NĐ-CP 호 시행령 제8조 3항을 개정한 제 68/2020/NĐ-CP 시행령.
8. 판매대행자가 수행한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가치세
9. EVFTA 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대한 시행 규칙
10. 수출품에 사용되는 외국 코드 및 바코드에 대한 지침

01

조세 관리

02

법인 소득세

03

이전가격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 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조세관리



신규 규정

2020년 05월 29일 제 84/NQ-CP 호 결의에 따른 공공 투자 지출을 촉진하고 Covid-19로 인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 지침

(1) 정부 결정 정책

- 정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하고 Covid-19로 인해 영업 활동이 중단된 기업, 단체, 가구, 개인에 대한 2020년 토지임대료 15% 감면;
- 2020년 말까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의 등록비 50% 감면;
- 2020년 3월부터 납부해야 하는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부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소비세 개정방안 검토
- Covid-19 방지를 위한 기부 및 지원금액은 CIT상 손금으로 인정;

- Covid-19 기간 동안 조사 및 감사를 제한하며 계획되지 않은 조사 및 감사를 수행하지 않음. 사전 조사 및 감사에서 사후 조사 및 감사로 변경

(2)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결정 정책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항공기 연료에 대한 환경보호세 감면;
-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2020년 CIT 부담액 30% 감면;

상기 정부 정책 및 해결방안은 향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을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 등록비 50% 감면에 대한 제 70/2020/NĐ-CP 호 시행령을 2020년 6월 28일 공표하였다. 또한, 재무부는 항공기 연료에 대한 환경보호세 결의 초안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조세관리법에 자세한 지침을 조세행정법의 여러 규정에 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 (“시행령 초안”)

시행령 초안은 세금 신고 및 산출, 과세, 세금환급, 면제와 감면, 정보 제공 의무, 납세자 정보 공개, 상업은행의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9개 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 초안은 조세행정법에 대한 제38/2019/QH14호와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발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 문서

세무조사/ 감사 활동 시행

세무조사 및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20년 5월 27일 세무 총국은 지역 세무국에 아래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 세무조사/감사팀 지정 : 세무조사 / 감사 팀장은 반드시 세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이어야 한다. 반면, 주요 팀원들은 세무감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
- 규정에 따른 엄격한 일일 감사/조사 일지 작성;
- 기업에서 현장 조사/감사 수행 전에 자료 준비에 집중하며, 확보한 자료에 대해 다시 요청하지 않는다. 세무 당국 시스템을 통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현장 세무 조사/감사 기간을 단축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 5월 27일 제 2195/TCT-TTK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법인소득세



신규규정

NGO를 통한 기부금 및 구호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

정부의 제12/2012/NĐ-CP호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고 외교부로 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NGO를 통해 재무부 제 78/2014/TT-BTC호 시행규칙 6조, 2 항, 2.23 및 2.24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 및 교육 목적 기부금은 CIT 확정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개인의 구호, 인도주의, 교육 진흥 목적 기부금의 경우 PIT 계산시 소득에서 차감된다.

(2020년 05월 18일 제 2011/TCT-DNNCN 호 OL 에 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5월 29일 제 43687/CT-TTHT호 OL)

근로자들의 Covid-19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CIT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됨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마스크, 손세정제, 보호장구, 테스트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보아 CIT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비용 지출 시 혜택을 받는 사람을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은 PIT 계산시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혜택을 받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PIT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6월 01일 제 44403/CT-TTHT호 OL)

글로벌 소득에 대해 외국인 개인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개인소득세

제 96/2015/TT-BTC 호 시행규칙 제4조에 요건을 충족하며 본사와 자회사간에 자회사가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개인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 외국인 개인의 글로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CIT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5월 25일 제 40839/CT-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이전가격



신규규정

법인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에 대한 제 20/2017/ND- CP 호 시행령 제8조 3항을 개정한 제 68/2020/ND-CP 시행령

2020년 6월 24일 정부는 법인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에 관한 제 20/2017/ND-CP 호 시행령 (“제20호 시행령”) 제8조 3항을 개정한 제 68/2020/ND-CP 호 시행령 (“제68호 시행령”)을 발행했습니다.

Deloitte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 법인세 (“CIT”) 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순이자비용(이자비용에서 예금이자수익 및 대출이자수익 차감 후)은 EBITDA (영업활동 이익에 순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 당기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순이자비용은 발생한 연도로 부터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 공제가능 이자비용 한도증가 관련

2017년 및 2018년법인세 수정신고는 2021년 01월 0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 초과 납부한 법인세는 (해당 이자상당액 포함) 2020년부터 최대 5년간 납부해야 될 법인세 금액과 상계된다.
- 2017 및 2018년에 대한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초과 납부 법인세를 이후 법인세 납부 금액과 상계하기 위해 납부세액과 연체이자를 조정하도록 지역 세무국에 요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6월25일자 딜로이트의 세무 뉴스를 참고하십시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부가가치세



신규규정

수입품에 대한 부가자치세 납부는 Covid-19로 인한 납기기한 연장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제 41/2020/NĐ-CP 호 시행령에 따른 Covid-19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자연 재해, 화재,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금액적으로 측정가능한 물질적인 피해를 입어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제12/2015/NĐ-CP 호 시행령 제5조 8항에 따른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재무부의 2020년 5월 29일자 제 6399/BTC-CST 호 OL)

대행 판매자가 수행한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업이 " X 상품을 사면 Y 사은품을 준다"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판매자에게 수행하도록 위험한 경우:

- 판매자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때 상품의 이름과 수량을 명시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이 0인 사은품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 회사가 판매자에게 사은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판매자는 대금 수령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5월 25일 제 40840/CT-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외국인계약자세



신규 규정

상표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베트남에서 상표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소득은 CIT 10% 및 부가가치세 5% 세율로 외국인계약자세가 부과된다.

계약자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표권 이전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실제 소유자가 이중과세 방지협정 대상인 경우 (소득의 실제 소유자는 제 205/2013/TT-BTC 호 시행규치 제 23조 및 6조, 3항에 따라 결정함), 계약자는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양방간의 계약 또는 협정의 주요 목적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세금 면제 및 감면인 경우, 이러한 면제 또는 감면신청은 기각된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0년 5월 27일 제 1312/CT-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 개정 및 보완

(2020년 6월 4일 딜로이트의 세무 뉴스를 참고하십시오)

베트남 EU 간 EVFTA 에 따른 원산지규정에 관한 시행 규칙

(2020년 6월 26일 딜로이트의 세무 뉴스를 참고하십시오)

Covid-19 기간동안 수입된 수입품에 대한 C/O 제출 기간 및 형식

총리의 Covid-19 유행 관련 시행규칙 발표일(2020년 1월 23일)로부터 재무부의 동 시행 규칙 종료 공표일까지 수출국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양식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전자 날인/서명 C/O 및 사진/스캔 형식 C/O 두가지 모두 세관에 수입 신고가 허용된다.

세관 신고자는 수입신고 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C/O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총국은 Covid-19로 인한 C/O 제출 기간에 대한 지침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 47/2020/TT-BTC 호 시행규칙 및 2020년 05월 29일 제 3480/TCHQ-GSQL 호 OL 규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재무부의 2020년 5월 27일 제 47/2020/TT-BTC 시행규칙(2020년 1월 23일 부터 유효), 호치민 관세국의 2020년 6월 5일 제 51/HQHCM-GSQL 호 OL, 관세총국의 2020년 5월 28일 제 3483/TCHQ-GSQL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

수출가공기업 (“EPE”) 인증을 위한 세관의 감독 조건

공장 건설이 완료되고 운영 준비가 된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관세지국은 아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Fence가 설치되고 외부와 분리되어 있다.
-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은 현장으로 입고되고 출고되는 제품들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은 세관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일일 감시 데이터는 회사 내에 최소한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수출가공기업의 시스템은 수출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원자재를 관리할 수 있고, 최종 세관 신고 목적으로 최종 생산품 및 원자재에 대한 자료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0년 6월 9일 제 3778/TCHQ-GSQL 호 OL)

화재로 소실된 수출가공기업의 수입 상품 처리

면세 혜택을 받은 수입품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관세당국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소실물량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관세당국이 기업의 신고 정보가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기업의 신고 정보를 승인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관련 조사 정보를 관세지국에 전달해야 한다.

관세당국이 화재로 소실된 물품의 수량 및 종류가 잘못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기업이 화재를 이유로 국내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은 현행 세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총국의 2020년 05월 19일 제 3232/TCHQ-TXNK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무역 및 관세



지침문서

수출가공기업(계속)

수출가공기업은 부가가치세 환급 자격이 없음

부가가치세 법령 제 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이다.

제 219/2013/TT-BTC 호 시행 규칙 제 19조 1항에 따라 VAT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VAT 납부 의무자이어야 한다.

수출가공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총국의 2020년 5월 8일 제 1811/TCT-CS 호 OL)

가격 협상 후 세관 신고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조건 및 경쟁상황에서 실제 지급된 가격 또는 판매자가 지정된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 할 가격이 되어야 한다.

Covid-19로 인해 할인된 상품으로써 수입된 상품이 위험관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입 시점에 가격에 대한 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수입자는 가격 재협상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호치민 관세국의 2020년 5월 26일 제 1548/HQHCM-TXNK 호 OL)

일시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관 신고금액

장기서비스 계약의 일환으로 수리 목적으로 기계장치, 설비, 부품을 수입하고 수리 완료 후 재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기계장치, 설비,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금액은 제 60/2019/TT-BTC 호 시행 규칙 제 9조 1항에 따라 첫번째 수입항에서 상품을 인도받기 위해 지불하는 총 금액으로 하며 일시 수입품과 관련한 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0년 5월 14일 제 3143/TCHQ-TXNK 호 OL)

수출품에 대한 전자계산서 사용

2020년 11월 01일 또는 세무당국의 제 119/2018/NĐ-CP 호 시행령 및 제 68/2019/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계산서 적용 발표 이후, 전자계산서 사용은 상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공 포함)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서 또한 전자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 5월 19일 제 2061/TCT-CS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